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2022. 3.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2. 3.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字 시행)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안 제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8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

별지1호서식 중 “구미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를 “구미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로 한다.

별표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기준액을 준용 함”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의 기준액을 준용 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촉 장



구미시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구미시의회의장 (인)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의 기준액을 준용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u>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u> 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u>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부의장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